

의안번호	2219024
의 퇴 인	문대림의원
회 답 일	2026.8.31.
추계번호	26D2662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의2 (제주4·3사건 관련 단체에 대 한 지원)	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 각 호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4·3희생자 유족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「현행법」 제24조(기념사업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 1. 추념 행사의 거행 2. 위령공원·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·사료관 건립 3. 제주4·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·관리 4. 제주4·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. 그 밖의 제주4·3사건 관련 기념사업 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4·3 희생자 유족회에 국·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5조의2(제주4·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제주4·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(안 제25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제주4·3희생자 유족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‘유족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’고 지급 근거를 두고 있으나, 개정안 시행 이후 보조금 지급 여부와 그 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고, 국유·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감면 대상·규모 등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,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행정안전부의 제주4·3사건 관련한 2026년도 예산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

세부사업	비목	내역	금액(백만원)
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운영 (2431-300)	운영비	일반수용비 등	85
	여비	국내여비	10
	업무추진비	사업추진비 등	9
	소계		104
과거사관련사업지원 (2431-301)	자치단체경상보조	제주4·3실무위원회 운영	77
		제주4·3희생자 및 유족관리	75
		제주4·3사건 사료조사 및 수집	67
		제주4·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	400
		제주4·3희생자 추념식 및 기념사업	1,196
		제주4·3사건법 후속조치	3,202
	소계		5,017
제주4·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(2431-303)	자치단체경상보조	제주4·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	700
		4·3 전국민 바로알리기 사업	70
	자치단체자본보조	제주4·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	435
		제주4·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	5,608
		제주4·3아카이브 구축	200
	사업출연금	제주4·3평화재단 출연금	3,800
	소계		10,813
합계			15,934

자료: 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또한,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4·3사건 진상 규명 및 기념사업을 지원 중에 있음

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」

제12조의2(사업비의 지원) 도지사는 제주4·3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, 해당사업을 단체나 개인이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주4·3사건 관련 위령제 봉행
2. 제주4·3사건 및 과거사 유적지 순례 사업
3. 제주4·3관련 문화·학술·기념 사업
4. 제주4·3유적지 정비·관리 사업
5. 제주4·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
6. 제주4·3사건 추념 사업
7. 희생자 및 유족 위로·복지 사업
8. 제주4·3사건 관련 국내외 평화 교류 사업

「제주특별자치도 4·3기념사업 지원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4·3기념사업”이란 「제주 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에 따른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.
2. “4·3관련 단체”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4·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단체 또는 법인과 4·3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.

제10조(사업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)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